

제12장 제도 규정

제12.1조 공동위원회의 설치

1. 양 당사국은 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
2. 공동위원회는 각 당사국의 관련 공무원으로 구성되고,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인도네시아 통상부의 장관급 공무원, 또는 그들 각각의 지명자들이 공동위원회의 공동의장이 된다. 공동위원회는 회합 일정에 대하여 합의하고 그 의제를 정한다.

제12.2조 공동위원회의 기능

1. 공동위원회는
 - 가. 이 협정의 이행과 운영에 관련된 모든 사안을 검토한다.
 - 나. 이 협정의 이행과 운영을 검토한다.
 - 다. 이 협정에 따라 설치된 모든 위원회와 부속기관의 업무를 감독하고 조율한다.
 - 라. 양 당사국 간 무역 및 투자 관계를 보다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을 검토한다.
 - 마. 이 협정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관한 불일치의 해결을 위하여 노력한다. 그리고

바.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대로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분야에 관련된 그 밖의 모든 기능을 수행한다.

2. 공동위원회는

가. 위원회 또는 부속기관을 설치하고 이에 책임을 위임할 수 있다.

나. 첫 번째 회합에서 자신의 절차 규칙을 채택할 수 있다.

다.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이견의 해결을 위하여 노력할 수 있다. 그리고

라. 권고할 수 있다.

제12.3조

공동위원회의 절차

1. 공동위원회는 이 협정의 발효로부터 1년 내에 회합한다. 공동위원회의 회합은 양 당사국이 공동으로 주재한다.

2.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그 이후에 공동위원회는

가. 각 당사국의 영역에서 교대로 개최되는 것으로 하여 정기 회기로 매년 회합한다. 그리고

나.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개최되거나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장소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하여 어느 한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 회기로 회합한다.

3. 공동위원회의 회합은 대면으로, 또는 양 당사국이 합의할 경우 이용 가능한 모든 기술적 수단을 통하여 개최될 수 있다.

4. 공동위원회의 모든 결정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제12.4조

위원회 및 부속기관

1. 이 협정에 따라 다음의 위원회들이 설치된다.

가. 제2.15조(상품무역위원회)에 따른 상품무역위원회,

나. 서비스무역 및 투자 위원회

다. 제8.4조(이행)에 따른 경제협력위원회

라. 제4.12조(관세 및 무역원활화 위원회)에 따른 관세 및 무역원활화 위원회

2. 공동위원회는 이 협정에 따라 발생하는 사안들을 다루고 이 협정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임시 기관을 포함한 부속기관을 추가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3.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모든 부속기관은

가. 양 당사국의 대표들로 구성된다.

나. 양 당사국이 공동으로 주재한다.

다. 그 기능 내에서 모든 사안에 관하여 합의로 결정을 내린다.

4. 위원회 또는 부속기관은 자신의 회합에 앞서 충분히 자신의 일정 및 의제를 공동위원회에 알린다. 그들은 공동위원회의 각 정기 회합에서 자신의 활동을 공동위원회에

보고한다. 위원회 또는 부속기관의 창설 또는 존재는 어느 한쪽 당사국이 어떠한 사안을 공동위원회에 직접 제기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5. 공동위원회는 위원회 또는 부속기관에 할당된 임무를 변경 또는 수행하기로 결정하거나 위원회 또는 부속기관을 해산할 수 있다.

제12.5조 접촉선

1. 이 협정이 적용되는 모든 무역 관련 사안에 관한 양 당사국 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양 당사국은 다음 접촉선을 수립한다.

가. 한국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그리고

나. 인도네시아의 경우, 통상부

또는 그 각각의 승계기관

2. 어느 한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의 접촉선은 이 협정의 이행과 관계된 사안을 담당하는 기관 또는 공무원을 적시하고 요청 당사국과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 각 당사국은 자국의 접촉선에 변동이 있는 경우, 시의 적절하게 다른 쪽 당사국에 이를 통보한다.